

의안번호	2202259
의 퇴 인	이수진 의원
회 답 일	2024.8.12.
추계번호	24B23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항	제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3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상세 사유

□ 우리나라는 노동3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등을 통해 금지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실현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함

- ①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제1호)
- ②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 ③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 ④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 ⑤ 단체행동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증언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제5호)

-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¹⁾
- 개정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으로는 i) 사용자에게 대한 형사처벌, ii) 행정적 구제수단으로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와 행정소송, iii) 사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근로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무효확인 등의 소 등이 있음²⁾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³⁾ 벌금 등 벌칙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와 행정소송 및 사법적 구제수단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됨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인 경우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 등에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됨
 -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인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 등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에 소요되는 비용임

1) 국가인권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22.6.14.

2)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21.1.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라목, 제24조,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제1항·제5항,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2항,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개정안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인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부당노동행위 분쟁 수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소요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직무대리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